

#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2021년 3월 4일

미래·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1년 2월 22일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1년 2월 25일

라. 상정일자: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1.3.4.)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가. 제안이유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sup>1)</sup>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

---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에 의거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2019년 6월 수립하였음. 특히 3차 계획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작성되었음.

단체장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를 협의하고자 구성된 『기후위기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운영규약의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기능(안 제4조)

-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추진
-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홍보실시
- 국가의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간 연대 활동
-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
-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2) 협의회 구성(안 제5조)

- 구성기관: 40개 자치단체

※ 참고자료1. 협의회 개요 참조

### 3) 임원(안 제7조)

- 회장(1명), 고문(광역단체장), 부회장(3명), 감사(2명), 사무총장(1명)

### 4) 회의 및 의결(안 제9조)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

○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5) 사무국 설치(안 제13조)

○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은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음

○ 사무국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총장이 있는 자치단체의 담당업무 과장으로 함

6) 자문위원(안 제14조)

○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 구성은 10명 내외로 함.

○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을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7) 재원(안 제16조)

○ 협의회는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함

가) 연회비

- 인구 50만 명 초과: 7,000,000원

-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명 이하: 5,000,000원

- 인구 30만 명 미만: 3,000,000원

나) 특별회비

다) 기타수입, 적립금 이자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 ~ 제158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 제102조

#### 나. 예산조치

- 협의회 부담금 7백만원(추경예산 편성 필요)
- 협의회 부담금 매년 7백만원 예산 반영

###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서선옥)

- 본 동의안은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구가 참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에서 정한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공동 처리를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 구성을 위해서는 관련 규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함
  - ※ 기 구성된 행정협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운영 규약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 필요
- 본 협의회는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장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를 위해 2016년 12월에 구성되었으며, 현재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기후

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서울 노원구, 은평구 등 전국 40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음.

○ 본 협의회에서는 국가의 에너지기본 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지방정부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를 위해

- 전국 순회 각종 심포지엄, 포럼 등 개최
- 에너지계획 전환의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특히 창립선언문을 통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환경보전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며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를 통하여 국가 에너지 계획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구성된 것으로

○ 규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와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 목적과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구성현황은 참고자료와 같음
-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협의회 임원, 임원의 임기, 회의 및 의결, 의안 제출, 의견 청취, 자문위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16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원과 회비의 관리 및

회계보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회 재원은 참여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연회비로, 규약에 따른 우리구의 연회비는 700만원임

- 검토결과, 최근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의 공식 선언으로 온실가스감축과 지역에너지전환이 선택적인 상황이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중앙정부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자치단체간 공동 대응을 위해 우리구의 협의회 참여 및 규약 동의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우리구는 현재 14개의 협의회(미래·복지위원회 소관 6개)에 참여하여 매년 4,860만원의 공동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본 협의회 참여 또한 매년 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수립에 노력해야 할 것임.

※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행정협의회 현황

연번	행정협의회 명칭	구성일	구성 단체수	담당부서	부담금 (천원)
1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1999.04.29.	13	녹색환경과	-
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2006.09.14.	93	건강관리과	2,000
3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2012.11.07.	27	가족정책과	3,600
4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2013.03.20.	40	알타정책과	10,000
5	센트리피케이션방지지방정부협의회	2016.06.26.	47	지역경제과	-
6	사회성과보상사업지방정부협의회	2016.11.01.	14	알타정책과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붙임 1) 협의회 개요 1부.

2) 관계법령 1부.

## 참고1

## 협의회 개요

○ 협의회 명칭 :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구.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 창립일 : 2016.12.15.

• 2020. 3. 25. : 명칭변경

○ 회 장 : 이재준 (경기도 고양시장)

• 부회장: 윤화섭(안산시장), 박정현(대덕구청장), 권익현(부안군수)

• 사무총장: 박승원(광명시장)

• 감사: 유성훈(금천구청장), 이재현(인천서구청장)

○ 가입회원 : 전국 40개 지자체

지역	지자체명
서울특별시(9)	서울특별시 본청(고문),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금천구, 강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종로구, 도봉구
인천광역시(1)	서구
대전광역시(2)	대전광역시 본청(고문), 대덕구, 유성구
부산광역시(1)	동구
경기도(12)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광명시, 오산시, 의왕시, 광주시, 여주시, 포천시, 구리시
충청북도(1)	청주시
충청남도(5)	충청남도 본청(고문),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공주시, 부여군
전라북도(3)	전주시, 완주군, 부안군
강원도(1)	춘천시
전라남도(1)	순천시
경상북도(1)	봉화군
경상남도(3)	고성군, 거제시, 거창군

○ 조직형태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 ○ 주요기능

-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분산형 발전시스템 확대
- 지역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 강화
-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홍보 실시 등
-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및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 ○ 부 담 금 : 300만원~700만원/년 (인구수에 따라 차등)

- 사무국 운영비, 회원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 포럼, 토론회, 홍보물 제작 등 운영관련 제비용

## ○ 공동 협력사업(안)

- 전국순회 각종 심포지엄, 포럼 등 개최
  - 지방자치단체, 학계, NGO 등과 교류를 통해 에너지 정책전환 공감대 확산
  - 전국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를 순회하면서 개최
- 에너지계획 전환의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 화석에너지 및 원전 확대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문제점 연구
  - 국가에너지계획의 현황과 개선방안(지방정부의 의견 반영) 연구
-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 정부계획 수립 시 지방정부의 의견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 반영
  - 기존 에너지 정책 중 절차 등에 하자가 있는 사업 재검토 요청
-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시 대체할 수 있는 지자체간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방안 등 발굴
  - 자치단체별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발굴하여 공유 네트워크 구축
-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 및 홍보
  - 주민 관점의 사례를 중심으로 홍보 영상이나 신문 광고 등을 제작하여 홍보
  -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육성의 필요성 및 이용 및 참여방법 등에 대한 주민 홍보

##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회의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 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2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① 법 제16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창립총회의 회의록
5.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6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협의체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시·도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를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